제 8 기 정기주주총회 소집통지서

주주님의 건승과 댁내의 평안을 기원합니다. 주식회사 에코프로비엠은 정관 제 21 조에 의하여 제 8 기정기주주총회를 아래와 같이 소집 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아 래 -

- **1. 일 시 :** 2024 년 03 월 26 일(화) 오전 10 시
- 2. 장 소: 충북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과학산업 2 로 587-40, 에코누리 에코홀 6 층(대강당)
- 3. 회의 목적 사항
 - 가. 보고사항
 - 감사보고
 - 영업보고
 -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실태 보고

나. 결의사항

- 제 1 호 의안 : 제 8 기(2023.01.01 ~ 2023.12.31) 재무제표 승인의 건

- 제 2 호 의안 : 정관 일부 변경의 건

- 제 3 호 의안 :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

- 제 4 호 의안 : 코스닥시장 조건부 상장폐지 및 유가증권시장 이전 상장 승인의 건

4. 경영참고사항 비치

상법 제 542 조의 4 및 동법 시행령 제 31 조에 의거하여 당사의 경영참고사항을 당사의 본·지점 및 국민은행 증권대행부에 비치하고 금융감독원 및 한국거래소의 전자공시 시스템에 공시하였으니,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5. 의결권 행사에 관한 사항

주주님께서는 주주총회에 참석 또는 전자투표시스템을 통하여 의결권을 직접 행사 하시거나, 위임장에 의거 의결권을 간접 행사 하실 수 있습니다.

6. 주주총회 참석 시 준비물

- 직접 행사 : 신분증(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)

- 대리 행사 : 위임장 원본 (주주와 대리인의 인적사항 기재, 인감 날인), 대리인의 신분증

7.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의 행사

주식회사 에코프로비엠은 주주님께서 주주총회에 직접 참석하지 않으시고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전자투표 제도를 활용하기로 하였습니다. 전자투표 관리업무는 삼성증권에 위탁하였으며, 주주총회에 참석이 어려우신 주주님께서는 주주총회일 이전에 전자투표를 통해 귀중한 의결권을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.

- 1) 전자투표 시스템 인터넷 및 모바일 주소 「https://vote.samsungpop.com」
- 2) 전자투표 행사기간 2024년 03월 16일 09:00 ~ 2024년 03월 25일 17:00 (기간 중 24시간 의결권 행사 가능. 단, 마지막 날은 오후 5시까지만 가능)
- 3) 본인인증 방법 공동인증, 카카오페이, 휴대폰 인증 등을 통한 주주 본인 확인 후 의안 별로 의결권 행사
- 4) 수정동의안 처리 주주총회에서 상정된 의안에 관하여 수정동의가 제출되는 경우 전자투표는 기권으로 처리

2024년 03월 11일 주식회사 에코프로비엠 대표이사 주재환, 최문호 (직인생략)

[별 첨]

□ 제 2호 의안: 정관 일부 변경의 건

변경 전	변경 후	변경의 목적	
제49조 (이익배당)	제49조 (이익배당)		
① 이익의 배당은 금전과 주식으로 할 수 있	① 이익의 배당은 금전과 주식으로 할 수 있		
다.	다.		
② (생략)	② (생략)		
③ 제1항의 배당은 제16조2의1항에 따라 정	③ 회사는 제1항의 배당을 위하여 이사회결의		
한 날 현재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	로 배당을 받을 주주를 확정하기 위한 기준일		
등록된 질권자에게 지급한다.	을 정하여야 하며, 그 경우 기준일의 2주 전		
	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.	베다 이어서 하다	
(신설)	제51조 (중간배당)	배당 유연성 확보	
	① 회사는 상법 제462조의3에 따라 이사회의		
	결의로 일정한 날을 정하여 그 날의 주주에		
	대하여 중간배당을 할 수 있다.		
	② 제1항의 중간배당은 중간배당 기준일 전에		
	발행한 주식에 대하여 동등배당한다.		
	③ 제9조의 우선주식에 대한 중간배당은 보통		
	주식과 동일한 배당률을 적용한다.		

□ 제 3호 의안 :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

구분	전기(2023년)		당기(2024년)	
	한도	집행	한도	증감율
이사	5,000 백만원	2,484 백만원	5,000 백만원	-

□ 제 4호 의안 : 코스닥시장 조건부 상장폐지 및 유가증권시장 이전 상장 승인의 건

- 목적 :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유가증권 시장 이전상장 추진
- 정기주주총회에서 부의안건으로 상정 후 가결 시 유가증권시장본부의 상장 승인을 조건부로 코스닥시장 상장폐지 및 유가증권시장 신규 상장 추진 예정입니다.